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운영 규정

□ 제정 : 2020. 9.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입학전형 (이하 '입학전형' 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담당부서"라 함은 당해 입학전형을 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응시생"이라 함은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를 말한다.
4. "회피"라 함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5. "배제"라 함은 입학 담당부서에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발 업무"란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처리 등의 업무를 말하며,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환경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응시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있는 경우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4-2-45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운영 규정

3.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 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응시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있는 경우 배제 제도를 운영한다. 단, 배제의 대상은 본교 시스템으로 추가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배우자)인 경우

제4조(회피·배제 제도 운영) ① 입학 담당부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배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생 등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회피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학 담당부서는 연말정산,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 본교 시스템 자료 및 서류 대조를 통해 교직원과 응시생과의 특수한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 당일 교직원, 입학전형 관련하여 위촉되는 외부인 등에게 서약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회피·배제 관계 여부를 재확인하고 해당인이 입학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배제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입학 담당부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내역 조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시기) ① 회피·배제는 당해 학년도 신입학 및 편입학의 모집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전, 평가 진행 중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③ 배제는 시스템 및 서류의 응시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후에 실시한다.
- ④ 재검증은 평가자 및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응시생과 회피·배제 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⑤ 사후 검증은 입학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6조(미신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사전에 회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즉시 배제 조치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처리방안) ① 응시생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평가 및 진행 등 선발 업무에서 제외한다.

② 응시생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피·배제 처리는 전형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과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의 수를 고려하여 단계별, 모집단위별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회피·배제 위반사례 발생 시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 「교원징계규정」 및 「일반직원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